

기본적인 운전규칙

1 도로의 좌측을 주행하기

차량은 도로 중앙(중앙선이 있을 때는 그 중앙선)에서 좌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2 도로의 좌측방향을 주행하기

1) 차선 지정이 없는 도로에서 추월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좌측에 대어 통행하십시오.

2) 동일한 방향으로 2개의 차량통행대(차선표시)가 있을 때는 차량통행대의 좌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또 3개 이상의 차량통행대가 있을 때는 가장 오른쪽의 차량통행대는 추월을 위해 비워 놓고 그 외의 차량통행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가장 느린 차가 좌측이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측 차량통행대를 통행합니다.

3 차선을 바꾸지 않고 주행하기

차량통행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추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통행대에서 비어져 나오거나 2개의 차량통행대에 걸치거나 해서 통행하면 안 됩니다.

4 긴급자동차의 우선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도로의 좌측에 대어 차량에 길을 비켜 줄 준비를 합니다. 사거리 근처에 있는 경우는 사거리를 피해 도로의 좌측에 기대어 일시 정지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도로의 좌측에 대어 진로를 비켜 줘야 합니다. 일방통행의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통행하기 쉽도록 도로 우측에 대야 됩니다.

5 노선버스 등의 우선

노선버스 등이 깜빡이를 켜고 버스 정류장에서 발진하려고 할 때는,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은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 보호

1 보행자 길을 지나갈 때

보행자나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보행자나 자전거와 차량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십시오.

2 보행자가 횡단할 때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와 그 부근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3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의 보호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는 사람, 흰색이나 노란색 지팡이를 갖고 있는 사람, 안내견을 동반한 사람을 안전하게 통행시킬 경우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늦춥니다. 카트를 끌면서 걷고 있는 고령자나 보행하기가 어려운 고령자도 같습니다.

4 인도주행

도로에 면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도나 측대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그 때 보행자의 이동을 막지 않도록 우선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십시오.

사거리의 안전한 통행 방법

1 중요한 점

사고는 사거리나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거리에 들어갈 때나 사거리를 통과할 때는 주위의 교통 특히 우회전하는 보행자나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우회전할 때는 오토바이가 반대 방향에서 사거리를 통과하면 다른 차량에 막혀서 보기가 어려우니 주의하십시오.

2 사거리의 올바른 통과 방법

- 1) 우선도로 또는 더 넓은 도로에 들어가기 전, 혹은 그 도로를 지나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며 그 도로에서 차량 또는 노면전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 중앙에 대어 사거리의 중심의 바로 앞쪽(내측)을 천천히 도십시오.

3) 운전자가 특정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는 도로표시판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

4) 전방의 도로가 혼잡해서 사거리 내에서 멈춘 상태로 신호가 바뀌고 교차하는 도로를 토왕하는 차량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면, 파란 불일 경우라도 사거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경찰이나 소방서, 횡단보도, 건널목 앞에 ‘정지금지 부분’으로 표시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3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통과

1) 우선도로나 더 넓은 도로에 들어가기 전, 혹은 그 도로를 통행하기 전에 감속하고, 교차하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또는 노면전철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2) 교차하는 도로가 같은 쪽의 사거리를 통행할 때는 좌측에서 오는 노면전철이나

차량에 길을 비켜 줘야 합니다.

- 3) 「일시정지」로 표시돼 있는 사거리에서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고, 교차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철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빨간 깜빡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4) 노란 깜빡 신호가 있을 때는 주의해서 사거리에 들어가십시오.

고속도로의 운전

1 고속도로 운전상의 특별한 주의

- 1) 본선차도에 들어갈 때는, 본선차선에 합류하기 전에 가속차선이 있을 때는 가속 차선에서 충분히 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본선차도에 들어갈 때는 본선 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고속도로의 운전

- 1) 본선 차로의 좌측에 있는 흰 선을 표지삼아 차량통행대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하십시오.
- 2)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측대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

3) 짐을 실은 트럭이나 속도가 느린 차량은 등판차선을 이용하십시오.

3 주차·정차

1) 고속도로에서 주차와 정차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돼 있습니다.

*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 충분한 폭이 있는 갓길 또는 측대에서 고장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것.

* 유료도로의 요금을 내기 위해 정차, 파킹에리어에 주차나 정차를 할 것.

2)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지는 것 등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상등, 주차
등, 미등을 켜고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정지한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
경보반사판을 설치할 때는 발연통을 사용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주의하십시오.

3) 로드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한 후는 차량 안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의 바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4) 고속도로에서 짐이 낙하해 흩어진 경우는 110 번 통보로 경찰에 신고하고
비상전화를 이용해 도로상에 있는 물건의 철거를 의뢰하십시오.

※ 비상전화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연결됩니다.

대지진 발생시

1 대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 * 급핸들, 급브레이크를 피해 도로의 좌측에 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십시오.
- * 차를 세운 후는 라디오로 지진이나 교통정보를 듣고 라디오의 지시에 따라 주위의 상황에 맞춰 행동하십시오.
- * 피난하기 위해 차량을 떠날 경우는 가능하면 도로 외에 주차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도로에 방치할 경우는 도로 좌측에 따라 주차합니다. 엔진을 끄고 시동 키를 꽂은 채 창문은 닫지만 문은 잠그지 마십시오. 피난할 사람이나 긴급차량·구조 차량의 방해가 되는 장소에 차를 주차하지 마십시오.

2 대지진 발생 후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른 교통통제가 이뤄진 경우의 대응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도부현(인근현을 포함)에서 재해응급 대책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통행차량 이외의 차량의 통행이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교통규제가 실시되어 있는 통행금지구역(교통이 통제되어 있는 구역이나 도로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다음 순서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속히 차량을 다음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 * 도로 지정구간이 교통규제되어 있는 경우는 규제구간 외.

* 지정된 지역의 교통이 통제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 외의 장소.

2) 조속히 이동하기가 어려울 경우 도로의 좌측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세우십시오.

3)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를 이동 또는 주차하십시오.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긴급통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을 때는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나 현장에 없어서 경찰관이 지시하는 수 없을 때는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 등을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표시의 종류와 의미

규제표시판

통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차량진입금지



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통행금지



대형승용자동차 등 통행금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이외의 경차량 통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지정방향외 통행금지

차량은 표지판에 제시된 방향

이외에는 가면 안 된다



차량횡단금지



전회금지



추월을 위해 우측 부분 비어져

나오는 통행금지



주차금지



자동차전용



보행자전용



일방통행



주차·정차금지



시간제한주차구간



자전거전용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최고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